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장철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8436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정치후원권 지급을 위한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삭제 등 (장철민의원안)	3

I. 개요

1. 장철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8436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장철민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2. 26.

(3) 회 부 일 : 2025. 2. 2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 또는 기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정치자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일부 또는 전부 면제하고 있음.

이 제도가 소득세를 납부하는 일정 계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 평등의 원칙 및 형평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폐지하고, 이를 대신하여 모든 유권자에게 연간 5만원의 정치후원권을 지급하여 정치자금 기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정치적 평등을 제고하고자 하며, 이에 맞춰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76조).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정치후원권 지급을 위한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삭제 등 (장철민의원안)

현 행	개정안
□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 세액 초과시 적용방법 (「소득세법 제61조」) ○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액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같은법 제76조 및 같은법 제88조의4 제13항에 따른 세액공제 합계액	□ 정치자금 기부 관련 세액공제액 제외 ○ (현행과 같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같은법 제88조의4 제13항에 따른 세액공제 합계액 ○ 시행일: 공포 후 1년 ○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 정치자금 손금산입특례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 공제대상: 거주자가 정당·후원회·선거위에 기부한 정치자금 ○ 공제방법 - 10만원 이하: 기부액의 100/110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 기부액의 15%(3천만원 초과분은 25%) 세액공제(사업자는 손금 산입)	□ 정치자금 손금산입특례 폐지(안 제76조 삭제) ○ <삭 제> ○ 시행일: 공포 후 1년 ○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 장철민의원안 2025. 2. 26. 발의(의안번호 8433), 장철민의원안 2025. 2. 26. 발의(의안번호 8436)

□ 개정안은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434호)¹⁾에 따른 정치후원권의 신설을 전제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정치자금 기부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거주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15% 세액공제하거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특례를 규정²⁾하고 있음.

[정치자금 세액공제 및 손금산입 특례]

기부금액	특례 내용
10만원 이하	기부금액의 100/110에 대하여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① 세액공제(15% 또는 25% ³⁾ 세액공제) 또는 ② 필요경비 산입(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 내)

법인 또는 당원이 아닌 거주자가 특별지원비·찬조비 등을 정당에 직접 지출한 경우에는 동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고⁴⁾, 내국인

1) 동 개정안은 국가가 18세이상 전국민에게 매년 1만원 상당의 정치후원권을 5매 지급하며, 후원금 및 기탁 용도로만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2025년 2월 27일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된 상태임

2)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① 거주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가 정치자금을 기부한 경우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3) 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100분의 25

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한 정치자금은 동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정치자금으로 봄.

동 조세특례는 특정 집단에 대한 정치자금 의존에 따른 정당의 편향된 정치활동을 막고 정치자금의 조달을 투명화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있어 정당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액 다수의 정치자금 기부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도입되었음.

참고로 2023년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인원은 78만 3,317명이고, 공제세액은 254억 6,800만원임.

[2020년~2023년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인원	285,088	306,812	434,431	783,317
공제세액	25,091	20,061	28,207	25,468

자료: 국세통계포털 4-2-17. 근로소득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현황

□ 개정안은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연간 5만원의 정치후원권을 지급하여 후원금 또는 기탁금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정치자금 기부금 관련 세액공

4) 「정치자금법」 상 법인은 정치자금의 기부가 제한되어 있고, 당비는 소속 당원으로부터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당원이 아닌 거주자가 특별지원비·찬조비 등을 정당에 직접 지출하는 경우는 「정치자금법」 상의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아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정치자금법」

제4조(당비) ① 정당은 소속 당원으로부터 당비를 받을 수 있다.

제31조(기부의 제한) ①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76-0...1 【 정치자금의 손금산입범위 】 ① 내국인이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한 정치자금은 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자금으로 한다.

② 법인 또는 당원이 아닌 거주자가 특별지원비·찬조비 등을 정당에 직접 지출한 경우에는 법 제76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정치자금의 기부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긍정적인 입법취지가 있음.

첫째, 모든 국민에게 연간 5만원의 정치후원권을 지급함으로써 국민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음. 특히 미국의 일부 도시에서 시의회 의원에 대한 피선거권자들을 대상으로 후원권 제도⁵⁾를 운영한 결과 이전에 비해 3배 이상의 정치기부 참여율을 기록한 것을 참고할 수 있음.

둘째, 면세점 이하의 근로소득자들에게도 정치 기부를 유도할 수 있음. 현재의 규정에 따를 경우, 10만원의 한도까지 기부한 정치 기부금 전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이는 근로소득자의 33%(2023년 기준)가 면세자임을 고려할 때, 저소득층에게는 충분한 정치기부의 참여 유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음. 또한 소득세를 내지 않는 학생, 구직자 및 은퇴자, 저소득층 등의 정치적 권리를 고려할 때, 유권자에게 5만원 상당의 정치후원권을 신설함으로써, 다수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기부를 통한 정치 참여를 독려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18세 이상의 4,425만명의 유권자에게 연간 5만원의 정치후원권을 지급하는 경우의 재정지출 규모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앞서 미국의 사례에서 후원권을 지급하였을 당시, 4%의 유권자가 후원

5) “Evaluating Seattle’s Democracy Voucher Program”, Lily Goodspeed, Fels Institute of Government

권 제도를 활용하여 기부를 한 것으로 밝혀짐. 개정안과 상기된 비율을 고려할 경우의 재정 소요는 대략 885억원으로, 현재 정치자금 기부금을 통한 공제세액인 250억 대비 600억원 이상의 추가적 지출이 소요됨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후원권 제도의 참여율이 높아질수록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급증할 수 있음.

둘째, 정치자금기부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공제를 적용 중인 고향사랑 기부금⁶⁾에 대해서도 유사한 요구가 제기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특히 110분의 100의 공제율이 적용되어 전액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⁷⁾ 제도는 정치자금 기부금⁸⁾과 고향사랑 기부금에만 있으며, 10만원 이하의 소액기부 부분에만 한정하여 운용하는 특별한 형태의 세제지원이 운영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2건의 개정안의 전제가 된 정치후원권의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434호)⁹⁾이 소관

6)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제1호를 따르되,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1.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 × 110분의 100
2. 10만원 초과 5백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10만원 × 110분의 100 + (고향사랑 기부금 - 10만원) × 100분의 15

7) 국세 세액공제액(10만원 이하분의 경우 110분의 100)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므로, 국세·지방세 세액공제액을 합하면 기부액이 전액 공제됨.

8)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① 거주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가 정치자금을 기부한 경우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상임위에서 심의되고 있음. 해당 법률에 따라 정치후원권이 신설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안이 의결될 경우, 정치후원권은 도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의 정치자금 기부 관련 세제특례만 폐지되는 결과가 되므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심사 경과를 개정안의 심의과정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49

9) 동 개정안은 국가가 18세이상 전국민에게 매년 1만원 상당의 정치후원권을 5매 지급하며, 후원금 및 기탁 용도로만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2025년 2월 27일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된 상태임